

LIG 넥스원(주) 위험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6년 3월 25일

개정 2016년 12월 13일

개정 2019년 2월 28일

개정 2021년 3월 29일

개정 2024년 3월 25일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'위험관리위원회'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기능)

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인식·감시·통제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전략 및 정책을 수립, 승인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 6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, 그 순위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,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및 회의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(2021.3.29 개정)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결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의 10%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 계약 및 수출계약의 체결 (2016년 12월 13일 개정)
2.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의 1% 이상의 손실 총당금 설정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 (2016년 12월 13일 개정)
3. 중요한 대규모 투자 (200억원 이상)

단 사업계획 승인시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의 경우에는 100 억원 이상
(2016년 12월 13일 개정) (2024년 03월 25일 개정)

4. 다액의 자금차입(500 억원 초과), 타인을 위한 200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및 보증행위 (2019년 2월 28일 개정)
5.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 및 처분 (자회사 포함, 100 억원 이상),
자산의 처분 (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.0% 이상)
(2024년 03월 25일 개정)
6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 8 조 (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 (2021.3.29 신설)

제 9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제 7 조에 따라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, 의견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1 조 (사무)

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 (2024 년 03 월 25 일 개정)

제 12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 년 0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